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69
----------	------

2016년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출 일 : 2016년 10월 31일
- 다. 회 부 일 : 2016년 11월 3일
- 라. 상 정 일 : 제27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교육정책관 김 용 복)

가. 제안 이유

-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 우리 시가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위탁기간(3년)이 만료되어,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청소년담당관 적격자심의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특히,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화곡청소년수련관은 최근 30% 이상의 급속한 다문화인구 증가와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청소년 인구분포가 낮아 열악한 환경임에도 법인이 청소년 관련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실적 증가 등 안정적 수련관 운영을 도모하였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57가길 26
- 시설규모 : 연면적 4,991m²(지상3층, 지하2층)

- 준공일자 : 2009. 4. 1.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 (2017. 1. 1. ~ 2018.12.31.)
- 위탁업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요예산 : 1,620,153천원('17년 예산)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9. 1. 1.~2011.12.31. (3년, 강서구청 관리이양)
 - 2차 : 2012. 1. 1.~2013.12.31. (2년, 강서구청 관리이양)
 - 3차 : 2014. 1. 1.~2016.12.31. (3년, 사단법인 흥사단)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수련관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이 대폭 증대되고 있으며,
- 또한,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화곡청소년수련관은 최근 30% 이상의 급속한 다문화인구 증가와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으로 안정적 수련관 운영으로 이용실적 등이 향상되었음.
- 이에,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급변하는 청소년 정

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화곡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현장 경험이 많은 현재 위탁운영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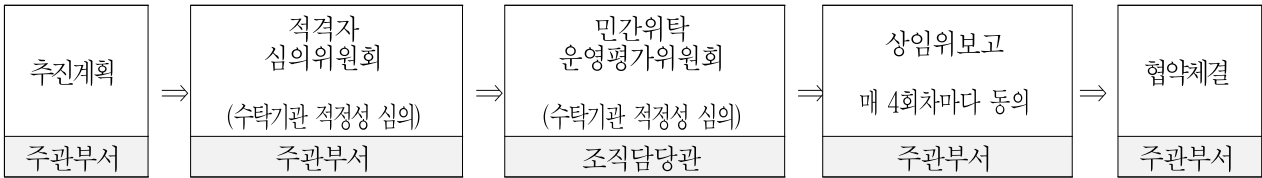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 태 식)

- 본 동의안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대안교육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계약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

<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개요 >

- 시 설 명 :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57가길 26)
- 시설규모 : 연면적 4,991m²(지상3층, 지하2층)
- 위탁기간 : 2년 (2017. 1. 1. ~ 2018.12.31.)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등
- 주요사업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활동사업, 청소년상담사업, 대안교육 사업 등
- 소요예산 : 1,620,153천원('17년 예산)
- 개원 및 준공 : 2009.4.1. - 수용인원 610명

※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제2항가 개정(2016.1.7.)에 따라 본 센터의 민간위탁이 4회차에 달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내역 >

차수	일자	수탁업체
1차	2009. 1. 1.	강서구청 관리이양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
2차	2012. 1. 1.	강서구청 관리이양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재계약)
3차	2014. 1. 1.	위탁협약 체결 (사)홍사단 (재위탁 공개모집)

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필요성 여부

○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은 관련 법령¹⁾에 따라 강서구에 설치한 지원형 청소년 수련 시설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강서구 내 81개 학교에 약 6만여명²⁾의 학생이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은 본 수련관과 강서청소년회관 2개소이며,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련관의 이용 수요가 늘고 있어 수련관의 지속적인 운영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 수련관의 구분 (자립형, 지원형) : 구분기분 - 수영장의 유무

1)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2) 2016년 4.1. 서울시교육청 통계자료

· 구분에 따라 수련관의 지원범위가 상이.

자립형시설은 총예산의 약 6~20% 가량 지원되며, 지원형시설은 총예산 중 약 15~30%가량 지원됨.

○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필요와 욕구 충족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다양한 체육·문화·교류·봉사활동에 대해 청소년들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이에 청소년수련관과 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 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복무·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나.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

○ 청소년 수련관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각호3)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역할 및 사업영역에 대해 위탁의 범위가 정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청소년들의 학교장 권한의 휴무확대 및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수련·문화·교류·체험 등의 활동을 조성하고, 지원 및 담당하는 역할은 실무와 교육을 통해 훈련된 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다.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

○ 현재 본 청소년수련관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사)홍사단은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도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업영역)①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3.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4.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5.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운영하고 있는바, 서울시의회에서 실시한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태 및 이용청소년 만족도 조사'에서 2개소 모두 양호한 평가를 받았음.

< (사)홍사단이 운영하는 수련관의 만족도 결과 >

수련관명	2016년 순위(점수)	2015년 순위(점수)	순위변동 (점수변동)	수탁법인
광진청소년수련관	5등(79.13)	5등(77.0)	0(2.13)	(사)홍사단
화곡청소년수련관	7등(78.32)	2등(81.8)	-5(-3.48)	(사)홍사단

<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수탁법인(홍사단)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명 : 사단법인 홍사단(대표 : 이운배)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2번지 - 설립목적 :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국민의 자질향상과 인재육성 - 설립연도 : 1913. 5. - 인력현황 												
소속	계	본부				산하조직			부설조직		수탁 시설	
		임원	상설 위원회	특별 위원회	사무처	국내 지부	해외 지부	아카 데미	운동 본부	부설 기관		
인원	920	60	25	56	14	118	31	260	54	72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구조 • 재산현황 : 24,258,326천원(동산 365,116천원, 부동산23,893,210천원) • 부 채 : 없음 • 수입현황 : 연 6,561,072천원(재산 1,569,278천원, 사업 4,991,794천원) 												

○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은 4개의 사업분야에 5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말 현재 계획대비 추진실적은 76.6%이고, 정원 25명중 현원 21명(정규직 13명, 계약직8명)으로 정원보다 적은 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직률이 14.3%를 보이고 있음.

< 정원, 현원, 이직률 현황,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

정원 (A)	현원 (B)	정규직	비정규직			이직인원 (C)	이직률 [C/B×100]
			계	계약직	초단시간		
25	21	13	8	8	-	3	14.3%

○ 자유학기제의 시행 및 청소년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유아의 이용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관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바, 청소년 시설 이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정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라기 보다는 시설과 조직의 역량을 모두 제대로 발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정원에 맞는

적정하고 원활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직원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음.

< 화곡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성인, 유아 이용 비율 >

연도	구분	계	청소년	성인	유아
2016	이용인원(명)	138,119	87,343	25,656	25,120
	이용률(%)	100	63.2	18.6	18.2
2015	이용인원(명)	168,739	110,033	25,855	32,851
	이용률(%)	100	65.2	15.3	19.5
2014	이용인원(명)	138,409	97,998	23,143	17,268
	이용률(%)	100	70.8	16.7	12.5

- 또한 종합성과평가에서 예산편성 지침 미준수, 법인전입금 관련 협약 미준수⁴⁾, 보조금관리 관련 규정 미준수⁵⁾ 관장의 겸직수당 지급 부적정⁶⁾ 정기재물조사 미 실시⁷⁾, 재산대장 미등재⁸⁾ 등이 지적된 바 있어, 행정, 재정, 회계 등의 규정준수가 강력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특히 위탁개시 시기인 2014년부터 청소년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바, 청소년 이용률 상향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4) 법인전입금 관련 협약 미준수 : '14년 10백만원 납입하여 위수탁협약 조건인 '14년도 20백만원, '15년도 20백만원, '16년도 20백만원 총60백만원 법인전입금 중 50백만원을 납입하지 못함
 5) 기타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 미준수 : 민간대행사업 보조금 이월 사용함('14년 기능보강공사 중 1층 폴딩도어 설치공사가 '15년으로 이월되어 계약하고 집행됨)
 6) 관장의 겸직수당 지급 부적정 : 수련관장이 상담센터장(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을 겸직한 '14년-'15년(1년 6개월) 기간의 겸직수당을 상담센터가 아니라 수련관에서 지급하여 규정 미준수함
 7)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 '14년 정기재물조사 미실시함('15년 10월 재물조사 실시)
 8) 재산대장 미등재 : 보온포트(109,000원, '14년 1. 구매), 커피메이커(87,000원, '15년 2. 구매) 재산대장 미등록함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69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 우리 시가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위탁기간(3년)이 만료되어,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청소년담당관 적격자심의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다. 특히,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화곡청소년수련관은 최근 30% 이상의 급속한 다문화인구 증가와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청소년 인구분포가 낮아 열악한 환경임에도 법인이 청소년 관련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실적 증가 등 안정적 수련관 운영을 도모하였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57가길 26
- 시설규모 : 연면적 4,991m²(지상3층, 지하2층)
- 준공일자 : 2009. 4. 1.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 (2017. 1. 1. ~ 2018.12.31.)
- 위탁업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요예산 : 1,620,153천원('17년 예산)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9. 1. 1.~2011.12.31. (3년, 강서구청 관리이양)
- 2차 : 2012. 1. 1.~2013.12.31. (2년, 강서구청 관리이양)
- 3차 : 2014. 1. 1.~2016.12.31. (3년, 사단법인 흥사단)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수련관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이 대폭 증대되고 있으며,
- 또한,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화곡청소년수련관은 최근 30% 이상의 급속한 다문화인구 증가와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으로 안정적 수련관 운영으로 이용실적 등이 향상되었음.
- 이에,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급변하는 청소년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화곡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현장 경험이 많은 현재 위탁운영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청소년담당관 청소년시설팀 백영자 (☎2133-4121)